

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1. 6. 23.>

## 서울특별시

수신자 조정남 귀하 (우 5408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42 102동1006호)  
(경유)

###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정보 내용	<p>[비영리체육법인 설립허가 관련(사단법인 대한민국창현태권도보존회)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드립니다.]</p> <p>비영리체육법인 설립허가 관련(사단법인 대한민국창현태권도보존회)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드립니다.</p> <p>청구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신청서(개인정보 제외)</li><li>2. 정관(재산총괄표 및 기본재산 목록 제외)</li><li>3. 회의록(개인정보 등 제외)</li><li>4.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없는 신청관련 첨부 서류 등</li></ol> <p>첨부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처리매뉴얼 캡처보내드립니다</p> <p>끝</p>		
접수일 및 접수번호	접 수 일 : 2023.03.31. 접수번호 : 10579820	당초 결정기간	2023.04.13.
연장 사유	제3자 의견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		
연장 결정기간	2023.04.27.		
그 밖의 안내사항			

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## 서울특별시

협조자

시행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

전화번호 02-2133-2680

팩스번호 02-

/w ha1sw ji092@ gm ail.com

/공개 구분

### 유의사항

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